

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표

직위	성명(한자)	주민등록번호	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	비고
			주소	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5조에 따른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업체명:

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

○○ 소방서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가 소방관계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, 지위승계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.
- 2.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란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(대표자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),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(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)을 말합니다.